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7편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1장 일반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1절 총칙</p> <p>885] 제2조(재판의 대상자)</p> <p>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u>모든 교인과 교역자</u>를 포함한다.</p> <p>② <u>교역자와 교인</u>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p> <p>③ <u>교역자와 교인</u>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편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일반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885】 제2조(재판의 대상자)</p> <p>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u>감리회 회원과 직임자</u>를 포함한다. <개정></p> <p>② <u>감리회 회원과 직임자</u>는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p> <p>③ <u>감리회 회원과 직임자</u>는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p>	<p>① 징계 대상을 감리회 회원과 직임자(職任者)로 명시함 회원=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헌법 제10조) 직임자(職任者)= 감리회 각급 의회·기관, 산하기관, 교회의 임원이나 직원</p>
<p>【886】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p> <p>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p> <p>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p>	<p>【886】 제3조(회원의 범과) <u>감리회 회원</u>이 다음의 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다. <개정></p> <p>① <u>교회의 예배·성례 등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u> <개정></p> <p>② <u>감리회가 이단이라고 판정한 종파의 교리나 활동을 지지하거나, 협조하거나, 그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단사상을 설교하는 행위</u> <개정></p> <p>③ <u>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는 행위</u> <개정></p> <p>④ <u>감리회 회원으로서 음주, 흡연, 마약법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여 감리회나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u> <개정></p>	<p>범과사실을 회원의 범과와 직임자의 범과로 구분하고, 회원의 범과사유 16개항을 13개항으로 알기 쉽게 정리함</p> <p>현행⑦->②항으로 이동 현행⑧->③항으로 이동</p> <p>④ 음주·흡연·불법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감리회나 교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게 함</p>

행	개 정 안	비 고
⑤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⑤ <u>계교로써 감리회의 회원, 직임자를 모함 및 악선전하거나 회원들 사이에 불화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언론기관·국가기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u> <개정>	⑤ 감리회의 성도·직임자·교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게 함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⑥ <u>감리회 각급 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적법한 집회나 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하거나, 적법한 의결·처분·재판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u> <개정>	⑥ 감리회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함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⑦ <u>감리회의 각급 기관이나 교회에 제출하는 문서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u> <개정>	⑦ 감리회의 의결·행정·재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함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⑧ <u>교회법정에서 위증하는 행위</u> <개정>	⑧ 올바른 재판을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 같이 증언 의무를 규정함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⑨ <u>감리회 각급 의회나 산하 기관(자치단체 포함)의 적법한 의결·행정처분·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재판법이나 행정재판법에 의한 최종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u> <개정>	⑨ 감리회 선거 외에도 의결·행정·재판 등에 대한 불복도 우선적으로 감리회 행정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⑩ <u>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행위</u> <개정>	⑩ 국가법률 위반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회 징계사유로 삼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⑪ <u>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재산처분대금이나, 교회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유지재단이사회 승인 조건 및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u> <개정>	⑪ 제4조 ⑦에서 이동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⑫ <u>교회 담임 임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행위.</u> <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⑬ <u>교역자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u> <개정>	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안사항/제4조⑤에서 이동
⑭ <u>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u>	⑭ <삭제>	
	⑭ <u>교역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u> <개정>	⑭->⑩ 이동 보완/ ⑭, 제4조⑥에서 이동

행	개정안	비고
<p>⑮ <u> ,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u></p> <p>⑯ <u>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u></p>	<p>⑮ <u>고발인의 고발 행위가 재판에서 무고로 판명되었을 때</u> <개정></p> <p>⑯ <삭제></p>	<p>⑮ 무고죄처벌</p>
<p>【887】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p> <p>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p> <p>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p> <p>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p> <p>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p> <p>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p> <p>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p> <p>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p>	<p>【887】 제4조(직임자의 범과) 감리회 직임자(각급 의회·기관, 산하기관, 교회의 임원이나 직원)가 다음의 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다. <개정></p> <p>① <u>장정을 고의로 오용하는 행위</u> <개정></p> <p>② <u>각 의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u> <개정></p> <p>③ <u>직임자의 지위나 권한 또는 감리회·교회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u> <개정></p> <p>④ <u>직임자의 지위·권한·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u> <개정></p> <p>⑤ <u>직임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비밀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누설하는 행위</u> <개정></p> <p>⑥ <u>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u> <개정></p> <p>⑦ <삭제></p> <p>⑧ <삭제></p>	<p>감리회나 교회의 업무를 맡은 사람은 교역자이든 평신도이든 감리회 법에 따라 정당한 업무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하게 함</p> <p>전 조항에 통합</p>
<p>【888】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p> <p>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p> <p>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p>	<p>【888】 제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p> <p>① <u>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u> <개정></p> <p>② <u>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u> <개정></p> <p>③ <u>정직은 그 직분과 직위를 보유하지만, 그 직에 부여된 모든</u></p>	<p>6조의 효력을 5조로 옮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p>

행	개정안	비고
<p>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p> <p>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p> <p>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p>	<p><u>권한과 혜택이 정지된다.<개정></u></p> <p>④ <u>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고 2년간 동종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개정></u></p> <p>⑤ <u>출교는 감리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개정></u></p>	
<p>【889】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p> <p>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p> <p>④ <u>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u></p> <p>⑤ <u>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u></p>	<p>【889】 제6조(징계의 적용) <u>징계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u></p> <p>① <u>제3조(회원의 범과) 제1항, 제3항부터 제14항은 면직이하에 처한다. <개정></u></p> <p>② <u>제3조(회원의 범과) 제2항은 정직이상에 처한다.<개정></u></p> <p>③ <u>제3조(회원의 범과) 제15항이 무고로 판명될 경우 고발자는 정직 1년 이상 2년이하에 처한다.<개정></u></p> <p>④ <u>제4조(직임자의 범과)는 근신이상 면직이하에 처한다. <개정></u></p> <p>⑤ <삭제></p>	<p>현행 ‘제5조’→‘제6조’ 이동</p> <p>구체적인 징계의 선택은 범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과자의 정상(고의성, 초범, 재범, 상습범등)에 따라 재판위원회가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므로, 범과의 종류에 대한 징계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p>
<p>【890】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p> <p>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 : 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p> <p>② 장로와 서리담당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 : 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p> <p>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 : 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p>	<p>【890】 제7조(재판의 심급과 관할) <u>재판의 심급과 관할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u></p> <p>① <u>재판의 심급은 2심제로 한다. <개정></u></p> <p>② <u>회원의 제3조 범과와 지방회 이하 직임자의 제4조 범과에 대한 재판 :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u></p> <p>③ <u>연회 이상 직임자와 감리회 산하 기관 직임자의 제4조 범과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u></p>	<p>① ‘모든 심사와 재판은 2심제’</p> <p>②, ③ 연회·총회·최고의 3개 재판기관 됨</p> <p>② 지방회 이하 직임자의 범과는 ‘연회재판→총회재판’</p> <p>③ 연회·총회의 직임자와 산</p>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p> <p>⑤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p>	<p>④ <u>감독·연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 <개정></p> <p>⑤ <삭제></p> <p>⑤ <u>동일한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 적용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다.</u><개정></p> <p>⑥ <u>심사·재판 중에 교역자나 평신도가 이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는 심사나 재판 종결후 이명해간 연회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연회책임자는 그 결과를 집행하여야 한다.</u> <신설></p>	<p>하기관 직임자의 범과는 ‘총회재판→총회최고재판’</p> <p>현행 ⑤항은 ④항으로 이동되어 삭제</p>
	<p>【000】 제00조(심사·재판위원 선출 및 겸임금지) 심사 및 재판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u>연회심사위원 및 재판위원은 각 지방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씩을 추천 받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을 선출하여 연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평신도는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u> <신설></p> <p>② <u>총회심사위원과 총회재판위원회 및 총회최고재판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심사위원과 재판위원 및 최고재판위원을 선출하여 감독이 임명한다. 또한 연회장회의에서 법조인 7명을 선출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심사·재판 및 최고재판위원회 위원으로 감독이 임명한다. 다만 법조인은 가급적 연회를 달리 하며, 감리회 고문변호사는 심사 및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u> <신설></p> <p>③ <u>심사위원 및 재판위원은 연회나 총회원이 아니어도 감리회 회원이면 누구나 추천 할 수 있다.</u> <신설></p> <p>④ <u>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은 임기 중, 감리회 각급 의회나 기관의 다른 직책을 겸임하거나, 연회급이상 자치단체의 회장</u></p>	<p>① 심사 및 재판위원의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함 - 연회 선출제도 폐지</p> <p>③ 심사 및 재판위원은 감리회 회원이면, 연회·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p> <p>④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의</p>

행	개정안	비고
	<p><u>을 할 수 없다. < ></u></p> <p>⑤ <u>심사 및 재판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추천되었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u> <신설></p> <p>⑥ <u>총회심사 및 재판위원으로 선임된 법조인은 연회, 총회의 심사 및 재판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u> <신설></p>	<p>겸임 및 단체활동을 제한하여, 재판대상 의결이나 처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p>
<p>【891】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p>	<p><좌동></p>	
<p>2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p> <p>【892】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p> <p>① <u>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 : 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u></p> <p>② <u>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u></p> <p>③ <u>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u></p> <p>⑤ <u>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u></p>	<p>제2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p> <p>【892】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u>다음과</u> 같이 한다. <개정></p> <p>① <u>범과로</u>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 : 15~17의 말씀대로 <u>두차례 권고(내용증명)</u>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p> <p>② <u>제3조(회원의 범과) 또는 제4조(직임자의 범과) 제2항, 제3항의 경우 3명 이상의 교역자 또는 장로가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직임자의 범과) 1, 4, 5, 6 항은 해당의회 행정책임자가 고발하여야 한다.</u> <개정></p> <p>③ <u>고소·고발인은 고소장·고발장에 증거를 첨부하여 1심을 관할하는 연회 또는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개정></p> <p>④ <u>고소·고발인은 연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및 1심 재판의 비용을 해당 의회에 기탁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때에는 행정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 <개정></p> <p>⑤ <좌동></p>	<p>② 3명이상이 고발 : 신명기 19:15절 / 개인감정에 의한 고발을 방지.</p> <p>④ 직임자의 범과에 대하여 직무상 고발의무를 명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게 함, 감독·연회장의 심사위 회부의무를 명시함</p>

행	개 정 안	비 고
<p>⑥ 행정책임자가 <u>범과 전반에 대하여</u>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p>	<p>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p> <p>⑦ <u>고소·고발의 내용이 사실로 판결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탁금을 반환하고, 심사 및 재판비용을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부담한다.</u> <신설></p>	<p>⑥ ‘범과 전반에 대하여’ 삭제</p> <p>⑦ 고소·고발이 진실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탁금을 반환하게 하고, 범과자에게 부담시킴</p>
<p>[894]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 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p>	<p>[894]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u>다만, 제3조(회원의 범과) 제9항 선거와 관련한 범과는 선거 종료 90일 이내, 12항의 범과는 5년이내로 한다.</u><개정></p>	<p>‘다만... 한다’ 추가</p> <p>교회재산에 관계되는 범과만 5년</p>
<p>[895] 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p> <p>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 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고소 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p> <p>③ 고소를 취하한 범과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p>	<p>[895] 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u>고발은 공동고발인 전원이 취하하여야 효력이 있다.</u>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3절 심 사</p> <p>[897]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u>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u></p> <p>① <u>구역 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u></p> <p>② <u>지방 심사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심 사</p> <p>[897] 제14조(심사위원회의 <u>조직</u>) <u>제3조·제4조의 범과 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기소하게 하기 위하여 연회와 총회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u><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① <u>연회심사위원은 00조 1항에 따라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두 개의 반으로 조직한다.</u> <개정></p>	<p>‘총회특별심사위원회’ 폐지</p> <p>①, ② 구역 및 지방심사 폐지</p> <p>③→①항 조정</p> <p>편찬시 해당조항 조정</p>

행	개정안	비고
<p>④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p> <p>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p> <p>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p>	<p>② <u>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며 5명을 한 반으로 두 개 반을 조직한다.</u> <개정></p> <p>③ <삭제></p> <p>③ <u>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④ <u>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u></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삭제></p>	<p>④→②항 조정</p> <p>⑥→③항으로 이동</p> <p>⑦→④항 조정</p>
<p>【898】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u>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u>, 지방회,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p>	<p>【898】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u>연회·총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개정></p>	
<p>【899】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p> <p>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p> <p>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p> <p>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p> <p>⑤ <u>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u></p>	<p>【899】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u>연회심사위원회는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u> <개정></p> <p>② <u>총회심사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u> <개정></p> <p>③ <삭제></p> <p>④ <삭제></p> <p>⑤ <삭제></p>	<p>2심제 재판기구 개편으로 재판위원회의 관할에 맞추어 심사 관할을 정함</p> <p>7개 항을 2개 항으로 정리</p>

행	개 정 안	비 고
<p><u>심사한다.</u></p> <p>⑥ <u>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u></p> <p>⑦ <u>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u></p>	<p>⑥ <삭제></p> <p>⑦ <삭제></p>	
<p>【901】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u>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u></p>	<p>【901】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u>심사위원 일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우려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u> <개정></p>	<p>심사위원 전원을 기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p>
<p>【902】 제19조(심사기간)</p> <p>① <u>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u></p> <p>② <u>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902】 제19조(심사기간 <u>및 화해권고</u>) <개정></p> <p>① <u>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u>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15일 이내에 한함)</u>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u> <개정></p> <p>② <u>총회 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일간 연장 할수 있다.</u> <개정></p> <p>③ <u>1심 심사위원회는 심사 이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서 상당한 기간(10일 이내)을 정하여 화해를 권고하여야 한다. 그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 <신설></p> <p>④ <u>심사중 심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교체로 인하여 심사가 중지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u> <신설></p>	
<p>【904】 제21조(기소) <u>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u></p>	<p>【904】 제21조(기소) <u>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u></p>	

행	개정안	비고
<p>①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분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행정책임자는 <u>제3조(회원의 범과) 제1항부터 제4항, 제9항부터 13항 및 감독.연회장 선거법과 제4조(직임자의 범과)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이의 직임을 재판 종료시까지 정지한다.</u> <개정></p>	
<p>【905】 제22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p>	<p>【905】 제22조(불기소)</p> <p>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개정></p> <p>② <u>고발이 취하되고 용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회의 법질서나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p>	<p>‘항’으로 구분</p>
<p>【908】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u>심사위원 임명권자가</u> <u>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u>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p>	<p>【908】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u>재심사에 회부한다.</u>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개정></p>	<p>조직과 행정법 제97조 및 제133조와 상치. 의회의 장이 개입할 사항이 아님.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저해.</p>
<p>【909】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u>허락된</u>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p>	<p>【909】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의 <u>신청이 있을</u>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개정></p>	<p>‘허락’→ ‘신청’</p>

행	개 정 안	비 고
<p>911]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p> <p>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u>상소심재판위원회</u>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u>해당 상소심 재판위원회</u>에 재심사 기록과 당부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u>상소심 재판위원회</u>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p> <p>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p> <p>④ 제3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⑤ <u>상소심 재판위원회</u>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⑥ <u>상소심 재판위원회</u>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 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재심사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p> <p>⑧ 재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p>	<p>【911】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p> <p>① <u>제9조(고소·고발) 제1항 고소인과 2항 고발인 및 제4항의 직무상 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u> <개정></p> <p>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u>해당 재판위원회</u>에 재심사기록과 당부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p> <p>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u>재판위원회</u>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p> <p>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p> <p>④ <좌동></p> <p>⑤ <u>재판위원회</u>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⑥ <u>재판위원회</u>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 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① ‘당부재판 신청권’ 인정 피해자 고소인과 직무상 고발자에게 당부재판 신청권 인정 당부재판의 대상 범과를 제한하지 아니함 당부재판비용의 예납과 부담 - 상소비용규정 준용</p> <p>② ‘상소심’ 삭제</p> <p>③ ‘상소심’ 삭제</p> <p>⑤ ‘상소심’ 삭제</p> <p>⑥ ‘상소심’ 삭제</p>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4절 재판</p> <p>912]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u>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구역회에 구역회 재판위원회</u></p> <p>② <u>지방회에 지방회 재판위원회</u></p> <p>③ <u>연회에 연회 재판위원회</u></p> <p>④ <u>총회에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재판</p> <p>【912】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① ③ 항과 <좌동> <개정></p> <p>② 총회에 총회 재판위원회와 <u>최고재판위원회를 둔다.</u><개정></p>	<p>현행③ → ①항으로 이동</p> <p>현행④ → ②항으로 이동</p>
<p>【913】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u>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② <u>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③ <u>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u></p> <p>④ <u>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u></p> <p>⑤ <u>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u></p> <p>⑥ <u>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u></p> <p>⑦ <u>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u></p> <p>⑧ <u>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u></p>	<p>【913】 제30조(재판위원회의 <u>조직</u>)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① <u>연회 재판위원회는 제00조 1항에 따라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개 반으로 2개의 반을 조직한다.</u> <개정></p> <p>② <u>총회 재판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임한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며 5명을 한 반으로 두 개 반을 조직한다.</u><개정></p> <p>③ <u>총회최고재판위원회는 연회에서 추천한 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임한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u><신설></p> <p>⑥ <삭제></p> <p>⑦ <삭제></p> <p>⑧ <삭제></p>	<p>현행③항이 ①항으로 이동</p> <p>현행④항이 ②항으로 이동</p> <p>현행⑤항이 ③항으로 이동</p>

행	개 정 안	비 고
<p><u>·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u></p> <p>⑨ <u>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u></p> <p>⑩ <u>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u></p> <p>⑪ <u>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u></p>	<p>④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 <개정></p> <p>⑤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p> <p>⑨ <삭제></p> <p>⑩ <삭제></p> <p>⑪ <삭제></p>	<p>현행⑨항이 ④항으로 이동</p> <p>현행⑩항이 ⑤항으로 이동</p>
<p>【914】 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p> <p>① <u>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 의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u></p> <p>② <u>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u></p>	<p>【914】 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p> <p>① <u>연회·총회 재판위원 및 총회최고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 의장이 추천되었던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u> <개정></p> <p>② <좌동></p>	<p>재판위원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전문성을 위하여 임기연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명자의 임기와 분리시킴.</p>
<p>【916】 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p> <p>① <u>교인 또는 교회임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p> <p>② <u>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p> <p>③ <u>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p> <p>④ <u>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p> <p>⑤ <u>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p>	<p>【916】 제33조(재판 관할)<삭제></p>	<p>제7조와 통합</p>

행	개 정 안	비 고
<p>【917】 제34조(재판)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p> <p>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p> <p>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p> <p>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p> <p>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p> <p>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917】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u>재판에는 기소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가 입회한다</u> <개정></p> <p>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u>송부 받아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u>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u>15일 이내</u>)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u>다만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하며 당사자의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u> <개정></p> <p>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 <u>이 경우 행정책임자는 재판기간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재판위원은 즉시 해임한다.</u> <개정></p> <p>⑥ <삭제></p>	
<p>【918】 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u>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918】 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u>심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리와 장정과 규칙에 익숙한 교역자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u> <개정></p>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u>교인</u>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p> <p>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④ <u>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예외로 한다.</u></p> <p>⑤ <u>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u></p>	<p>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u>평신도</u>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u>이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 한다.</u> <개정></p> <p>③ <좌동></p> <p>④ <삭제></p> <p>⑤ <삭제></p>	<p>② 국선변호인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고소,고발(피고소, 피고발)인이 필요에 따라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선임한 이가 지급함이 원칙.</p>
<p>【924】 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p> <p>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p> <p>③ 사실심리 :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p> <p>④ 변호인의 변론</p> <p>⑤ 증인 채택(원고측, 피고측으로 구분하여)</p> <p>⑥ 변호인의 최후 변론</p> <p>⑦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최후 진술</p> <p>⑧ 판결</p>	<p>【924】 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u>인정신문</u> <신설></p> <p>④ <좌동></p> <p>⑤ <u>피고소인, 피고발인 모두 진술</u> <개정></p> <p>⑥ <u>증인채택 및 증거조사(고소(발)인측, 피고소(발)인측)</u> <개정></p> <p>⑦ <u>변호인의 최후 변론</u><개정></p> <p>⑧ ⑦항과 <좌동> <개정></p> <p>⑨ ⑧항과 <좌동> <개정></p>	
<p>【931】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p> <p>①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p> <p>②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p>	<p>【931】 제48조(판결) 판결은 <u>다음과</u> 같이 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u>제3조의 범과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판결 전에 고소를 취</u></p>	<p>② 범과가 고소인의 사익을</p>

행	개정안	비고
<p>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 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p> <p>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p> <p>④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p> <p>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 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p> <p>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p> <p>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p>	<p><u>하하면 기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범과가 감리회의 교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u><개정></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u>유죄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총회최고재판위원회는 법조인이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u><개정></p> <p>⑥ <u>징계의 종류나 기간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진 때에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의 순서로 의견을 합쳐서 과반수에 이르는 의견으로 정한다.</u><신설></p> <p>⑦ <u>유죄판결의 정족수에 미달되면 무죄를 선고한다.</u><신설></p> <p>⑧ <u>재판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진 때에는 그 내용을 판결 이유에 기재한다</u><신설></p> <p>⑨ ⑥ 항과 <좌동></p> <p>⑩ ⑦ 항과 <좌동></p>	<p>침해한 것일 때에는 고소인이 취하하면 징벌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재판하게 함</p> <p>⑤ 유·무죄의 판결 모두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불가능한 경우가 생김. 또한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과반수도 안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p> <p>⑥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함</p> <p>⑦ 유죄판결의 정족수에 미달되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명시함</p> <p>⑧ 판결에 여러 의견의 내용을 표시하여 판결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임</p>
<p>[933]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p> <p>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p> <p>②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p>	<p>[933]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p> <p>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u>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와 총회 최고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u><개정></p> <p>② <좌동></p>	

행	개 정 안	비 고
<p>【938】 제55조(상소의 사유)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p> <p>②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p> <p>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p> <p>④ <u>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u></p> <p>⑤ <u>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u></p>	<p>【938】 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u>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u> <개정></p> <p>② <u>심문이나 증거조사 기타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때</u> <개정></p> <p>③ <좌동></p> <p>④ <삭제></p> <p>⑤ <삭제></p>	<p>②항과 통합</p> <p>②항과 통합</p>
<p>【939】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p> <p>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u>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정지한다.</u></p>	<p>【939】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p> <p>① <좌동></p> <p>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u>이를 6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소심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지를 명한다.</u> <개정></p>	<p>패소자 재판비용 미납시 직무 정지</p>
<p>【942】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p> <p>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p> <p>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p> <p>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u>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u>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p>	<p>【942】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u>파기 환송되어 심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 한다.</u>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p>	

행	개정안	비고
<p>하여 재판(自判)한다.</p> <p>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p>	<p>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판(自判)한다. <개정></p> <p>⑤ <u>상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상소심 재판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법조인 1명 이상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 <개정></p> <p>⑥ <u>제48조의 규정은 상소심 판결에도 준용한다.</u><신설></p>	<p>⑤ 재석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면, 과반수도 안 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p> <p>⑥ 1심 판결에 관한 제48조를 항소심 판결에 준용함</p>
<p>[947] 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947] 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u>30일 이내에</u>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과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15일 이내)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p>	
<p>7절 복권</p> <p>[948] 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p>	<p>제7절 ____ . 복권 <개정></p> <p>[948] 제65조(사면) 징계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지위를 회복한다. 당사자가 징계 중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해별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소속 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해별심사에 이의가 없으면 최종 재판을 한 재판위원회가 속한 의회에서 의회의 장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잔여기간을 해별 사면할 수 있다. <개정></p>	<p>사면의 정의를 분명히 함.</p>
<p>[949]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별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별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p>	<p>[949] 제66조(복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지위를 회복한다. 당사자가 징계를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복권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소속 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복권심사에 이의가 없으면 최종 재판을 한 재판위원회가 속한 의회에서 의회의 장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할 수 있다. <개정></p>	<p>복권은 인사기록부에서 삭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판결 받은 것을 연회에서 복권 불가</p>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2015. 10. 30.) < ></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p> <p>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심사 및 재판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까지이며,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 하되, 법과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이전의 구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부칙 추가</p> <p>① 징계사유인 범과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소급 처벌의 금지 원칙></p>
<p style="text-align: center;">2장 행정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1절 총칙</p> <p>【961】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행정 재판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961】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u>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행정처분권을 가지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불행사가 위법하고 부당하여,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감리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행정재판절차를 통하여 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감리회의 행정 질서를 바로 세움에 있다.</u> <개정></p>	<p>헌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판의 목적을 정리함</p> <p>행정처분을 행하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도 행정재판 대상으로 삼아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p>
<p>【962】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p> <p>① 취소재판 : 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p> <p>② 무효 등 확인재판 : 각 의회의 의결이나 <u>의회의 장이</u>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p>	<p>【962】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p> <p>① 취소재판 : 각 의회의 장 <u>또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장이</u>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개정></p> <p>② 무효 등 확인재판 : <u>각 의회의 의결이나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장이</u>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p>	<p>각 의회의 장 →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으로 구분</p>

행	개정안	비고
<p>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p> <p>③ 의무이행재판 :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p>	<p>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개정></p> <p>③ 의무이행재판 : 각 의회의 장 또는 <u>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장</u>이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개정></p>	
<p>2절 재판기관</p> <p>[964]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p> <p>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p> <p>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p> <p>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p>	<p>제2절 재판기관</p> <p>[964]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당회·구역회·지방회의 의결, 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의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개정></p> <p>② <u>연회·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 연회장 및 연회 각급 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의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개정></p> <p>③ <u>총회·총회실행부위원회·입법의회·총회특별위원회(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제외)의 의결, 감독과 연회장 및 총회 각급 기관,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 각급 의회나 각급 행정기관·산하 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 감독·연회장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은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u><개정></p>	<p>① 지방회 이하의 의결, 행정처분은 연회재판위와 총회재판위</p> <p>② 연회의 의결, 행정처분은 총회재판위와 총회최고재판위</p> <p>③ 총회, 총회 각급기관, 산하 기관의 의결·행정처분, 권한분쟁,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의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최고재판위에서 관할.</p>

행	개 정 안	비 고
	<p><u>④ 연회·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각급 기관이나 산하기관, 개체교회,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감리회 장정 및 행정의 시행규칙이나 의결·행정처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한다, 그에 대한 재심은 총회최고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u></p>	<p>④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의 처분·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법에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라 대상이 아님.</p> <p>④ 유권해석을 UMC와 같이 감리회 재판기관에서 담당함 → 행정과 재판의 기준을 통일시키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p> <p>④ 유권해석의 대상 : 장정·의결·행정처분</p> <p>④ 유권해석의 이유 기재 → 합리적인 기준을 밝혀 실무의 기준이 되게 함</p>
<p>3절 당사자</p> <p>【965】 제5조(원고적격)</p> <p>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p> <p>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p> <p>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p> <p>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p>	<p>제3절 당사자</p> <p>【965】 제5조(원고적격)</p> <p>① <u>감리회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이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회원은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u></p> <p>② <u>감리회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이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감리회의 질서가 현저히 문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회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u></p> <p>③ <u>감리회 각급 의회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 기관 사이의 권한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u></p> <p>④ <u>감독·연회장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은 선거권자 3명 이상이나 후보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취하할 경우에는 원고</u></p>	<p>① 회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권리구제 소송 - 권리가 침해된 회원</p> <p>② 감리회 질서 문란 회복 소송 - 당해 의회 회원 3명 이상이 제소할 수 있게 함</p> <p>③ 권한 분쟁에 관한 행정재판</p> <p>④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 - 선거권자 3명 이상이나 후보자</p>

행	개정안	비고
<p>연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p> <p>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준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p> <p>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p>	<p><u>전원이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u> <개정></p> <p>⑤ <u>감리회의 각급 의회, 각급 행정기관, 산하 기관과 이해관계인은 장정이나 의결·행정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재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을 총회최고재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u> <개정></p>	<p>⑤ 장정·의결·행정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의 요청과 재심 요청</p>
<p>【966】 제6조(피고적격)</p> <p>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u>각 의회의 장</u>을 피고로 한다.</p> <p>② 각 의회나 <u>각 의회의 장</u>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준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p>	<p>【966】 제6조(피고적격)</p> <p>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u>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장</u>을 피고로 한다. <개정></p> <p>② <u>각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u>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준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개정></p> <p>③ <u>감리회의 직위를 상실시키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는 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있는 개인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u> <신설></p>	<p>① 각 의회의 장 → 각급 행정기관이나 산하 기관</p> <p>③ 직위 상실이나 직무 정지에 관한 소송은 해당 직위의 개인도 공동피고로 삼게 함</p>
<p>【967】 제7조(피고의 경정)</p> <p>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u>행정재판위원회</u>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967】 제7조(피고의 경정)</p> <p>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u>재판위원회</u>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① ‘행정’ 삭제</p>
<p>4절 재판</p> <p>【968】 제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행정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제4절 재판</p> <p>【968】 제8조(재판위원회)</p>	<p>재판위원회 일원화</p>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p> <p>② 총회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일반재판법에 의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겸합)를 둔다.</p>	<p>행정재판은 일반재판법에 의하여 구성된 연회 및 총회의 재판위원회와 총회최고재판위원회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한다.</p> <p><개정></p>	
<p>【969】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항과 같다.</p> <p>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 기피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p> <p>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 기피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p> <p>③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p> <p>④ 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p> <p>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p>	<p><삭제></p>	
<p>【970】 제10조(재판위원의 임기)</p> <p>① 행정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급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당해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p>	<p><삭제></p>	

행	개 정 안	비 고
<p>【971】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p> <p>① <u>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u></p> <p>② <u>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p> <p>③ <u>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경우</u></p> <p>④ <u>재판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p> <p>⑤ <u>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의회결의 참여는 제외)</u></p>	<p><삭제></p>	
<p>【972】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p> <p>① <u>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u></p> <p>② <u>재판위원이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각 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할 수 있다.</u></p>	<p><삭제></p>	
<p>【973】 제13조(조정전치)</p> <p>① <u>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u>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u></p> <p>③ <u>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u></p>	<p>【973】 제13조(조정전치)</p> <p>① 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개정></p> <p>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p> <p>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p>	<p>①항 ‘행정’ 삭제</p> <p>③ 기간 30일로단축</p>

행	개 정 안	비 고
<p>【974】 제14조(조정신청기간)</p> <p>① <u>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u></p>	<p>【974】 제14조(청구기간)<개정></p> <p><u>행정재판이나 행정조정신청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행정재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u></p>	<p>행정재판의 청구기간도 함께 규정함</p>
<p>【975】 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행정재판의 당사자는 제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감리교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u></p> <p>② <u>소송대리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송대리인은 예외로 한다.</u></p> <p>③ <u>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u></p>	<p>【975】 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개정></p> <p>① <u>1심 또는 2심의 행정재판에 관여하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나, 교리와 장정과 규칙에 익숙한 교역자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u></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② <u>신청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 한다.<신설></u></p>	
<p>【977】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p> <p>① <u>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u></p> <p>② <u>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u></p>	<p>【977】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과 반환)</p> <p>① <u>원고가 행정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연회나 총회의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행정조정 및 행정재판의 비용을 기탁금으로 예납하여야 한다.<개정></u></p> <p>② <u>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개정></u></p> <p>③ <u>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가 예납한 기탁금을 반환하고, 행정조정 및 재판의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신설></u></p>	<p>원고가 승소하면 그 기탁금을 반환하고, 피고에게 행정조정 및 재판의 비용을 부담시킴</p>
<p>【978】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p>	<p>【978】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p>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u>행정재판위원회</u>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p>	<p>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u>재판위원회</u>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p> <p>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u>재판위원회</u>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개정></p>	
<p>【983】 제23조(쌍방불출석)</p> <p>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u>행정재판위원회</u>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일지정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이상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p>	<p>【983】 제23조(쌍방불출석)</p> <p>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u>재판위원회</u>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984】 제24조(심리의 방식)</p> <p>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u>의회</u>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p> <p>③ 행정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p>	<p>【984】 제24조(심리의 방식)</p> <p>① <u>재판위원회</u>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u>기관</u>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p> <p>② <u>재판위원회</u>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개정></p>	
<p>【986】 제26조(증거조사)</p> <p>①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p>	<p>【986】 제26조(증거조사)</p> <p>① <좌동></p>	

행	개 정 안	비 고
<p>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물건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u>행정재판위원회의</u>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u>재판위원회</u>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p>	
<p>【991】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u>행정재판위원회</u>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p>【991】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동> ② <u>재판위원회</u>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p>【992】 제32조(판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u>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u>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준비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u> 	<p>【992】 제32조(판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아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한다.</u>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15일 이내)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② <u>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각 의회나 기관 사이의 권한의 준비에 관하여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감리회의 교리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u> 	<p>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때 감리회의 교리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는 제도 신설(행정소송법 제28</p>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u>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u></p> <p>④ <u>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u></p> <p>⑤ <u>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u></p> <p>⑥ <u>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u></p>	<p><u>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게 한다. <개정></u></p> <p>③ <u>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개정></u></p> <p>④ <u>행정조정비용과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u></p> <p>⑤ <u>재판비용 부담자가 6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직을 명한다. <개정></u></p> <p>⑥ <좌동></p>	<p>조 사정판결제도)</p> <p>③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면, 행정의 안정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절반도 안 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p> <p>④ 행정조정비용도 재판비용에 포함시킴</p>
<p>【993】 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는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u>행정재판위원회의</u>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p>	<p>【993】 제33조(정지가처분)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는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u>재판위원회</u>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개정></p>	
<p>【995】 제35조(판결의 확정)</p> <p>① <u>행정재판위원회의</u>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판위원회의</u>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p>	<p>【995】 제35조(판결의 확정)</p> <p>① <u>재판위원회</u>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개정></p> <p>② <u>재판위원회</u>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u>최고재판위원회</u>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개정></p>	
<p>【996】 제36조(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재판위원회는 제32조(판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p>	<p>【996】 제36조(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u>피고가 확정된 행정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u></p>	<p>‘조명 변경’</p>

행	개 정 안	비 고
<p>_____ 아니하는 의회의 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회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p>	<p><u>따라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 배상을 명하거나 이행완료시까지 정직을 명할 수 있다.</u><개정></p>	
<p>【997】 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행정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p>	<p>【997】 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u>재판위원회</u>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개정></p>	
<p>【998】 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p>	<p>【998】 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u>재판위원회</u>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개정></p>	
<p>5절 상 소</p> <p>【1001】 제41조(상소의 이유)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규위반의 판결이 있을 때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③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④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부당할 때 ⑤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p>제5절 상 소</p> <p>【1001】 제41조(상소의 이유) <u>일반 재판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개정></p>	<p>일반 재판법 동일</p>
<p>【1002】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002】 제42조(상소의 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u>재판위원회</u>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② <u>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6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소심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때까지 정직을 명한다.</u><신설> 	<p>일반재판법과 동일</p>

행	개정안	비고
<p>【1003】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u>서기에게</u> 송부하여야 한다.</p>	<p>【1003】 제43조(원심 <u>재판위원회</u>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u>재판위원회</u>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u>소속 행정책임자에게</u> 송부하여야며, <u>행정책임자는 7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u><개정></p>	<p>기일을 명기</p>
<p>【1006】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p> <p>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p> <p>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p> <p>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u>행정재판위원회</u>에 환송한다.</p> <p>⑤ 이 경우 1심 <u>행정재판위원회</u>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p> <p>⑥ 상소심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p>	<p>【1006】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u>재판위원회</u>에 환송한다.<개정></p> <p>⑤ 이 경우 1심 <u>재판위원회</u>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u>60일</u> 이내에 판결한다.<개정></p> <p>⑥ <u>상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상소심 재판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법조인 1명 이상)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개정></p>	<p>⑥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면, 절반도 안 되는 소수의견이 결론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p>
<p style="text-align: center;">6절 재심</p> <p>【1007】 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u>행정재판위원회</u>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재심</p> <p>【1007】 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u>재판위원회</u>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p>	
<p>【1012】 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p>	<p>【1012】 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p>	

행	개 정 안	비 고
<p>, 관할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p>	<p>다만, 관할 <u>재판위원회</u>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2015. 10. 30.)</u> <신설></p> <p><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p> <p><u>제2조(경과조치)</u></p> <p>① <u>구법의 행정재판법에 의하여 조직된 행정재판위원회 및 행정조정위원회는 임기 종료까지 행정조정 및 행정재판 사건을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u> <신설></p> <p>② <u>구법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한까지 이 법에 의하여 그 장정을 유권해석하며, 이 법 시행 후의 장정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u> <신설></p> <p>③ <u>이 법 시행 이전의 구법에 의하여 행한 각종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신설></p>	<p>②기존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장정유권해석에 대한 재심 허용 명시</p>

행	개정안	비고
<p>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p> <p>1장 총 칙</p> <p>1015] 제1조(목적) <u>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8편 _____ · 연회장 선거법 <개정></p> <p>제1장 총 칙</p> <p>【1015】 제1조(목적) <u>감독·연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연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u></p>	
<p>【10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u>감독, 감독회장 선거</u>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u>감독, 감독회장의 선거</u>를 말한다.</p>	<p>【10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u>감독·연회장 선거</u>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5장 제95조(연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u>감독·연회장의 선거</u>를 말한다. <개정></p>	
<p>【1017】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u>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할 하에 그 연회 선관위에서 주관한다.</u></p> <p>① <u>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u></p> <p>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통해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당선자가 없으면 재선거한다.</p> <p>③ <u>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선관위가 공포한다.</u></p> <p>④ <u>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u></p> <p>⑤ <u>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한다.</u></p>	<p>【1017】 제3조(감독·연회장 선거) <u>감독, 연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u></p> <p>① <u>감독·연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u></p> <p>② <좌동></p> <p>③ <u>감독 당선자는 총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연회장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한다. <개정></u></p> <p>④ <u>감독·연회장이 임기 시작전이나 임기 중 사망, 사퇴, 선거(당선) 무효 판결, 선거 중지, 선거 지연에 의한 궐위 시에는 재·보궐선거 규정에 따른다. <개정></u></p> <p>⑤ <삭제></p>	<p>③ ‘해당연회’→‘총회’, ‘감독회장’→‘연회장’</p> <p>④ 궐위의 범위를 정함</p> <p>⑤은 ④으로 합병</p>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2장 선거관리위원회</p> <p>1018]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u>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u>를 둔다.</p> <p>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u>감독회장이</u>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연회(미주특별연회 포함)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p> <p>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선거관리위원회</p> <p>【1018】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u>감독 및 연회장 선거관리위원회</u>를 둔다. <개정></p> <p>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u>감독이</u>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p> <p>② <u>연회에 연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u> <개정></p> <p>③ <좌동></p>	
<p>【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u>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구성하되 2배수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u></p> <p>② <u>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u></p> <p>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p> <p>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p>	<p>【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p> <p>② <u>감독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u> <개정></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감독 및 <u>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과 같은 지방회 소속</u>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p> <p>⑦ <좌동></p>	

행	개정안	비고
<p>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020】 제6조(관장사항)</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p>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u>감독, 감독회장</u>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1020】 제6조(관장사항)<개정></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u>및 연회장의</u>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p>② 연회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의 관할 하에 <u>감독·연회장의</u>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p> <p>③ <u>총회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u> <신설></p>	
<p>【1022】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u>필요한 경우 선거 기간 중 약간 명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u></p>	<p>【1022】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정></p>	‘필요한~있다’ 삭제
<p>【1023】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p>	<p>【1023】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p>	

행	개정안	비고
<p>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p> <p>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u>특별심사위원회</u>에 고발하여야 한다.</p> <p>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 위원회를 둔다.</p> <p>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p> <p>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p>	<p>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좌동></p> <p>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u>총회심사위원회</u>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p> <p>③ <좌동></p>	<p>특별심사위원회 → 총회심사위원회</p>
<p>【1025】 제11조(의결 정족수)</p> <p>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② 선관위가 <u>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u>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p>	<p>【1025】 제11조(의결 정족수)</p> <p>① <좌동></p> <p>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u>등록을 거부하거나</u>,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p>	<p>② ‘등록거부’ 추가</p>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1027] 제13조(피선거권)</p> <p>① <u>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② <u>감독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③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u>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u></p> <p>④ <u>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u></p> <p>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p> <p>⑥ <u>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u></p> <p>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p> <p>⑧ <u>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1027】 제13조(피선거권)</p> <p>① <u>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 내지 3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u></p> <p>② <u>연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연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 내지 3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u></p> <p>③ <u>감독·연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2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u></p> <p>④ <u>감독·연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과반수 참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u></p> <p>⑤ <좌동></p> <p>⑥ <u>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 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다만,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 후 또는 교회의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 한 사람. <개정></u></p> <p>⑦ <좌동></p> <p>⑧ <u>감독 및 연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u></p>	<p>③ 감독, 연회장 임기와 동일</p> <p>④ 당회의 의결 정족수</p> <p>⑤ 조직과 행정법에 감독, 연회장 자격에 있음.</p>

행	개정안	비고
<p>총회까지로 한다.</p> <p>⑨ <u>감독 및 감독회장</u>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p> <p>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p>	<p>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p> <p>⑨ <u>감독 및 연회장</u>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p> <p>⑩ <좌동></p> <p>⑪ <u>현직 연회장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이나 연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u> <신설></p> <p>⑫ <u>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감독이나 연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u><신설></p>	<p>⑪ 경과규정을 둬.</p>
<p>【1028】 제14조(선거권)</p> <p>① <u>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u></p> <p>② <u>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u></p> <p>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p> <p>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p> <p>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성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p> <p>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p>【1028】 제14조(선거권)</p> <p>① <u>감독 선거권자는 각 연회 연회원으로 하며, 연회장 선거권자는 해당연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준회원, 협동회원, 특별회원과 미과 및 휴직자는 제외한다.</u> <개정></p> <p>② <u>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 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개정></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삭제></p> <p>⑤ ⑥항과 <좌동></p>	<p>① 현행 ①과② 통합</p>

행	개정안	비고
<p>1029] 제15조(선거인 명부)</p> <p>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p> <p>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p> <p>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1029】 제15조(선거인 명부)</p> <p>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1030】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u>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u>,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p>	<p>【1030】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개정></p>	입기와 동일
<p style="text-align: center;">4장 후보자의 등록</p> <p>【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p> <p>① <u>감독, 감독회장 후보자</u>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u>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u>) 2통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후보자의 등록</p> <p>【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p> <p>① <u>감독 . 연회장 후보</u>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행	개정안	비고
<p>7.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p> <p>8.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p> <p>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p> <p>10.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p> <p>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p> <p>12.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p> <p>13.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p> <p>14.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p> <p>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p> <p>② <u>현직 감리사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개시 3개월 전까지 사퇴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7. <좌동></p> <p>8. <좌동></p> <p>9. <좌동></p> <p>10. <좌동></p> <p>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u>실효된 형 포함</u>) 2통 <u>다만 [1027]제13조 6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개정></p> <p>12. <좌동></p> <p>13. <좌동></p> <p>14. <좌동></p> <p>15. < ></p> <p>② <삭제></p>	<p>② 1027단제13조①항에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5장 선거운동</p> <p>【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선거운동</p> <p>【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좌동></p>	
<p>【1035】 제21조(선거감시단)</p> <p>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선거감시원 2명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p> <p>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p>	<p>【1035】 제21조(선거감시단)</p> <p>① <좌동></p> <p>② <좌동></p>	

행	개정안	비고
<p>한다.</p> <p>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⑤ <u>선거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u></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삭제></p>	○자원봉사에 의한 무보수
<p>【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p> <p>① <u>감독회장</u>,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p> <p>② <u>감독</u>,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p> <p>③ 감리사</p> <p>④ 선거관리위원</p>	<p>【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p> <p>① <u>감독 및</u>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p> <p>② <u>연회장</u>,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u>지방급 이상 자치단체장</u> <신설></p>	
<p>【1037】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u>홍보 명함</u>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p> <p>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7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p> <p>③ 후보자는 제2항의 동영상을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037】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u>후보자가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u>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행	개정안	비고
<p>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u>선거 당해연도부터</u> 적용한다.</p> <p>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p> <p>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p> <p>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p> <p>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u>광고 게재, 화환 증정</u> 등을 하는 행위</p> <p>⑤ <u>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u></p> <p>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p> <p>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p> <p>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p> <p>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p> <p>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p>	<p>【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u>다음의</u>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u>선거일 1년 전부터</u> 적용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와 <u>동창회 등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을 하는 행위</u> <개정></p> <p>⑤ <삭제></p> <p>⑤ ⑥ 항과 <좌동></p> <p>⑥ ⑦ 항과 <좌동></p> <p>⑦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u>관여나 참여하는</u> 행위 <개정></p> <p>⑧ ⑨ 항과 <좌동></p> <p>⑨ ⑩ 항과 <좌동></p>	<p>경과조치에 별도로 정함</p> <p>④ ‘광고게재, 화환조항’ 삭제, ‘동창회’ 추가.</p>
<p>【1039】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p> <p>① <u>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u></p>	<p>【1039】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p> <p>① <u>선거권자는</u>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하거나, <u>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2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 <개정></p>	<p>① 제9조 2항은 ‘고소고발시에 3인이 해야함’</p>

행	개정안	비고
<p>②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좌동></p> <p>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2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6장 투표와 개표</p> <p>【1041】 제27조(투표용지)</p> <p>① 투표용지에 제〇〇회 총회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p> <p>②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p> <p>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u>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제작한다.</u></p> <p>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투표와 개표</p> <p>【1041】 제27조(투표용지)</p> <p>① 투표용지에 제〇〇회 총회 감독선거, 연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개정></p> <p>④ <좌동></p>	<p>③ ‘다만, 미주특별연회.... 제작한다’ 삭제</p>
<p>【1043】 제29조(우편투표)</p> <p>① <u>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③ <u>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u></p>	<p><삭제></p>	<p>‘보칙’으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행	개정안	비고
<p>1048] 제34조(보궐선거)</p> <p>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1048】 제34조(재·보궐선거) <개정></p> <p>① <u>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감독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개정></p> <p>② <u>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연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 하며, 보선된 연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개정></p>	<p>※ 연회원전체가 선거권자로 하는 직접선거이므로 재·보궐 선거도 직접선거를 하여야 함.</p>
<p>【1049】 제35조(직무대행)</p> <p>① <u>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u>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u></p>	<p>【1049】 제35조(직무대행) <삭제></p>	<p>총회와 연회 실행부위원회 직무에 규정</p>

행	개정안	비고
<p>1043] 제29조(우편투표)</p> <p>① <u>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③ <u>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u></p>	<p>【000】 제00조(우편투표)</p> <p>① <u>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 선거나 연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u></p> <p>② <u>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u> <개정></p> <p>③ <좌동></p>	
<p>【1050】 제36조(재정)</p> <p>① <u>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u></p> <p>② <u>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u></p> <p>③ <u>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u></p> <p>④ <u>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u></p> <p>⑤ <u>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한다.</u></p>	<p>【1050】 제36조(재정)</p> <p>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u>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u> 충당한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p> <p>⑤ <u>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신설></u></p> <p>⑥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u>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u> <개정></p>	<p>④항을 4항과 5항으로 분리</p>
<p>【1051】 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p> <p>① <u>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1051】 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p> <p>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u>총회 심사위원회에</u>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u>90일 이내</u>에 하여야 한다. <개정></p>	

행	개정안	비고
<p>② 특별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총회 심사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p> <p>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p>	
<p>【1052】 제38조(벌칙처벌)</p> <p>① <u>후보자가 아닌</u>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u>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p> <p>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u>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p> <p>③ 선거관리위원이 <u>선거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u>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p> <p>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u>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p> <p>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p> <p>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p> <p>⑦ <u>총회 개회 전일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u></p>	<p>【1052】 제38조(벌칙처벌)</p> <p>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p> <p>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p> <p>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5조 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p> <p>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삭제></p>	<p>① 운동원이나 은퇴한 이가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함.</p> <p>② 선거법위반시 후보자에게 벌칙 강화</p> <p>⑦ 1051단체37조①항과 동일</p>

행	개정안	비고
<p>⑧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p> <p>⑨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보류한다.</p> <p>⑩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u>고의, 중대한 과실로</u> 업무수행을 한 자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가 일정기간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⑧ <삭제></p> <p>⑦ ⑨와 <좌동></p> <p>⑧ <u>감독및 연회장선거</u>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u>을 한 자와 <u>위원회는</u>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u>총회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u>, 그 직임을 정지하며 <u>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u> <개정></p> <p>⑨ <u>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마스크업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등을 말한다.</u> <신설></p> <p>⑩ <u>선거법 제36조 3항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자는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여야 한다.</u> <신설></p> <p>⑪ <u>선거법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 <신설></p>	<p>⑧ 7조④항에 규정됨</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5. 10. 30)</u></p> <p>【000】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000】 제2조(경과조치) <u>이 법 제13조 제11항과 제24조는 2016년 시행하는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u> <신설></p>	<p>부칙추가</p> <p>피선거권/ 현직 연회장 선거운동금지사항/ 1년적용</p>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1장 총칙</p> <p>【1067】 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이 200명 이상, 입교인이 7만 명 이상 <u>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u></p> <p>② 지역 특성상 필요에 의하여 개체교회 수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교연회는 관리자를 둔다.</p> <p>③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 호칭하고, 유지재단설립과 은급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총회 산하 타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1장 총칙</p> <p>【1067】 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 분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u>1500개소</u>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u>700개소 이상, 정회원이 500명 이상, 입교인이 20만 명</u>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개정></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① 연회 분할 요건 강화</p>
	<p>【000】 제00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p> <p>① <u>연회 통합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u> <신설></p> <p>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신설)</p> <p>③ 입법의회는 재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통합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신설)</p>	<p>통합 절차 신설</p>

행	개정안	비고
<p>1070】 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u>분할에</u>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한다.</p>	<p>【1070】 제6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u>분할 및 통합에</u>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3장 지방 경계</p> <p>【1071】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3장 지방 경계</p> <p>【1071】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u> <개정></p>	
<p>【1072】 제8조(지방 분할의 요건)</p> <p>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u>45개소</u> 이상이 되고 정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p> <p>② 지방 개체교회의 수가 <u>35개소</u>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 할 수 있다.</p>	<p>【1072】 제8조(지방 분할의 요건)</p> <p>① 지방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u>60개소</u> 이상이 되고 정회원 <u>30명</u>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개정></p> <p>② 지방 개체교회의 수가 <u>45개소</u> 이상일 경우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지방과 통합하여 분할 할 수 있다. <개정></p>	지방 분할 요건 강화 의회법 확인
<p>【1073】 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p> <p>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u>3분의 2 이상의</u>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p> <p>② 연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p> <p>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073】 제9조(지방 통합과 분할의 절차) 지방 <u>통합과</u> 분할은 <u>다음의</u> 절차에 따른다. <개정></p> <p>① 지방 <u>통합과</u>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u>과반수 이상</u>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1074】 제10조(지방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1074】 제10조(지방 통합 및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u>지방 통합 및 분할로 인하여</u>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p>	

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 (2015. 10. 30)</u></p> <p>【0000】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연회 경계		
<p>【108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중국선교 16개 지방으로 한다.</p>	<p>【108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호주선교, 중국선교 18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p>	
<p>【1084】 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남동,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용진, 중국 31개 지방으로 한다.</p>	<p>【1084】 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남동, 남동서,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용진, 중국 32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p>	
<p>【1085】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안양동,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오산, 오산서, 평택, 평택서, 평안, 경기남 25개 지방으로 한다.</p>	<p>【1085】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평촌,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서,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화성동, 오산, 오산서, 평택동, 평택서, 평택남, 평택북, 안성 28개 지방으로 한다.(26개)<개정></p>	
<p>【1086】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 광주동, 구리, 남양주,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0개 지방으로 한다.</p>	<p>【1086】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하남, 광주동,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1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p>	
<p>【108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p>	<p>【108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 금산, 세종, 공</p>	

행	개 정 안	비 고
, 청양, 일본 20개 지방으로 한다.	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일본 <u>23개 지방으로</u> 한다. <개정>	
【1091】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대구, 마산동, 마산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울진, 울산, 경북서, 제주, 필리핀선교 14개 지방으로 한다.	【1091】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u>부산동, 부산서, 부산남</u> 대구, <u>창원동, 창원서</u> ,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u>제주</u> , 울진, 울산, 경북서, 필리핀선교 <u>15개 지방으로</u> 한다. <개정>	
【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 경계는 뉴욕, 시카고, 미동부, 캐나다, 남가주, 미중북부, 미중부, 미서남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캐나다서, 뉴욕북, 미서북부 13개 지방으로 한다. 단, 이외의 국외지방은 국내 해당 연회에 편입시킨다.	<삭제>	
【1093】 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전북, 광주, 여수 8개 지방으로 한다.	【1093】 제11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u>전북서남</u> , 광주, <u>여수광양</u> 8개 지방으로 한다. <개정>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10편 과정법</p> <p style="text-align: center;">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p> <p>【1097】 제3조(장로과정)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① ~ ④ 현행</p> <p>⑤ 지방회는 장로 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p> <p>⑥ 고시문제는 위원회에서 공동출제하여 지방 과정고시위원회에 위임한다.</p> <p>⑦ 감리교계통 신학대학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신학원(4년제)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 과정 중 「교리와 장정」만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편 과정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p> <p>【1097】 제3조(장로과정) <좌동></p> <p>①~ ④ <좌동></p> <p>⑤ 지방회는 장로 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u>사람은</u>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u>다만, 사회평신도국에서 운영하는 평신도대학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한 사람은 2년급 진급과정을 면제한다.</u> <개정></p> <p>⑥ <좌동></p> <p>⑦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p> <p>【1098】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p> <p>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u>서리</u>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p> <p>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p> <p>【1098】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p> <p>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파송된 <u>사람은</u>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p> <p>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p>	

	개정안	비고
<p>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p> <p>③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p> <p>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p> <p>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p> <p>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p> <p>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p> <p>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p>	<p>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u>사람은</u>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u>목사안수를 받은 후 본 교회나 타 교회의 부담임자로, 또는 기관 목사</u>로 파송받을 수 있다. <개정></p> <p>③ 군목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u>사람은</u>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u>지도목사 세미나는 연 2회 개설한다.</u> <개정></p> <p>⑧ <좌동></p> <p>⑨ <좌동></p>	
<p>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p> <p>【1103】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u>아래</u> 각</p>	<p>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p> <p>【1103】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u>다음과</u></p>	

	개정안	비고
<p>__과 같다.</p> <p>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p> <p>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p> <p>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p> <p>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p> <p>⑤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p> <p>⑥ 수련목회자로서 기관 파송을 받을 이의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p> <p>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 보고 관리 등을 한다.</p> <p>⑧ 고시과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p> <p>⑨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p>	<p>같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u>총회 산하에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구를 연구한다.</u> <개정></p>	